

장애 등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비고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자/ 심하지 않은 자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증명서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	공 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자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, 의사 진단서 1부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기존 4~6급
시각 장애	공 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장애인증명서*	기존 1~2급
		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장애인증명서, 의사 진단서 1부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증명서	기존 3급 1, 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자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 1부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증명서*	기존 4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0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증명서*	기존4급, 5급 1호
		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증명서*	기존 5급 2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0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증명서, 의사 진단서 1부	기존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기존 6급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자/ 심하지 않은 자	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존 2~6급
기타	임신부	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	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
	과민성대장 · 방광증후군	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 1부	
	특수 및 중복장애,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· 장애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의사 진단서 1부	검토 후 안내

* 해당 항목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유형(기등급 등)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-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포인트), 150%(18포인트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
-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(답항 번호선택), 기입형(답항 번호기입) 2종류 중 택 1
-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<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>

○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**의사소견서** 또는 **임신사실확인서** 가능

○ 발급일자 :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○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(아래 3가지)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/시야각 명기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전부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**제공받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**
 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
<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	※ ① ~ 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어려움이 있음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확대문제지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/시야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0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확대답안지	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	